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94. 12. 23.

시민보건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4. 12. 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4. 12. 17.

다. 상정일자 : 제26회 정기회 제9차위원회('94.12.23)상정, 심사토론, 의견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유승권 청소과장)

가. 제안이유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전면시행함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의 종류 및 제작·봉투종류에 대한 판매가격을 규정하고, 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의 종류·수수료 및 재활용가능품목의 종류와 배출요령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수거량의 확대를 제고하며 종량제의 조기정착 및 무단투기자의 단속을 위해 과태료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용어 정의(안 제 2조)
-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근거 및 종류별 규격봉투의 수수료 결정(안 제11조)
- 규격봉투의 종류별 제작·관리 및 판매소의 지정·해제 및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14조 내지 제22조)
- 수수료 부과·징수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규정(안 제23조 내지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절차 및 서식을 규정(안 제29조 내지 제3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의 시행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기본과 추가봉투의 구분없이 모든 생활쓰레기를 유료봉투속에 넣어 버리도록 의무화하고, 유료봉투의 규격, 재질 및 가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함.
- 봉투가격 산정방식이 바뀔에 따라 사람들의 수거료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4인가족 기준 월평균 수거료부담은 4천원선에 달해 기존 건물분재산세 기준으로 160원을 내왔던 저소득층 가정은 20배이상 수거료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쓰레기종량제 실시 1주일을 남겨놓은 현재 우리구에서 확보된 종량제규격봉투는 2개월분으로 앞으로 공급이 원활치 못할 경우 종량제 파행운영이 예상되고 있음. 봉투의 제작 및 판매업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홍성환 위원) :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업소수를 더 늘릴 수는 없는가?
- 답변(유승권 청소과장) : 계약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늘릴 수는 있다.
- 질의(송윤석 위원) : 규격봉투 판매소 이윤은 몇%인가?
- 답변(유승권 청소과장) : 6%이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8
----------	-----

제출일자 : 1994. 12. 16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전면시행함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의 종류 및 제작·봉투 종류에 대한 판매가격을 규정하고, 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의 종류·수수료 및 재활용가능품목의 종류와 배출요령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수거량의 확대를 제고하며 종량제의 조기 정착 및 무단투기자의 단속을 위해 과태료 부과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용어정의(안 제2조)
-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근거 및 종류별 규격봉투의 수수료 결정(안 제11조)
- 규격봉투의 종류별 제작·관리 및 판매소의 지정·해제,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14조내지 제22조)
- 수수료부과·징수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규정(안 제23조 내지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절차 및 서식을 규정(안 제29조 내지 제33조)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3·16 법률471호)

**제15조**

- 폐기물관리법(1994·3·6 법률 제4541호)
- 폐기물관리법시행령(1994·5·4 대통령령 제14255호)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4·3·24 건설부령제550호)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일반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정폐기물 :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3. 다량폐기물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또는 1회에 1톤이상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4. 다량배출일반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5. 건축물폐채류: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6. 대형생활폐기물: 가정 또는 사업장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

7. 재활용가능품: 별표1에서 정함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

제 3 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①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전구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그 사

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 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2.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면적·도시계획상 용도·관계지적도·임야도 등 부속도서
3.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제 4 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시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 5 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①일반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쓰레기·건축물폐채류 및 기타 일반폐기물(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폐채류를 제외한 일반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축물폐채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한 후 일반폐기물(건축물폐채류) 처

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3. 기타 일반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성상별  
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6 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일반폐기물  
을 종류·성상별로 분류할 수 있는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  
한다.

제 7 조(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  
시조례 제11조의 의한 일반폐기물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  
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8 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  
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이  
하 “일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  
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  
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배  
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  
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  
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 제17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

제 3 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지도감독

제 9 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일반폐기  
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  
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등을  
포함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  
리업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  
침에 맞추어 확보·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  
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기술능력 확보상태·일반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  
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2회(반기별 1  
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1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이하 “종량  
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2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가격에 의한다.

제12조(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중 종량제폐기물은 가정 및 사업장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다량폐기물, 다량배출일반폐기물, 건축물폐재류 등은 제외한다.

제13조(폐기물의 배출 방법) ①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이를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종량제 실시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 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 ①규격봉투는 가정용봉투·사업장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가정용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고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가정용봉투는 흰색, 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주황)색, 공공용봉투는 엷은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사양은 별표4와 같다.
4. 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하되 그 밀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5조 제1호내지 제4호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동장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공공용봉투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

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동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규격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5. 규격봉투대금 기한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7. 기타 행정지시사항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구청장은 제20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 5 장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제23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단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
3.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7과 같다.
4.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처리비는 별표8과 같다.

②제1항 제2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①일반폐기물 수수료등은 당해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처리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비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건축물폐재류에 대한 처리비는 일반폐기

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5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등) ①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매월 징수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26조(가산금등)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와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7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28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

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을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관할 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교환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봉투판매인은 동장이 발부한 교환확인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동장의 확인서 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 6 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9조(과태료 부과 및 처분통지등) ①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①구청장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3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 7 장 보 칙

제3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처리비·과태료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 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 이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지</li> <li>-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li> <li>- 종이컵, 팩</li> <li>- 상자류(과자, 포장, 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게 함</li> <li>-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li> <li>-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li> <li>- 비닐코팅포지, 공책의 스프링등을 제거함</li> <li>- 비닐포장지는 제외</li>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대 묶음</li> <li>- 비닐코팅 부분 제거</li> <li>-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li> </ul>
2.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li> <li>-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하여 부피축소</li> <li>-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li> <li>-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li> <li>-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li> </ul>
3.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료수병, 기타병</li> <li>- 농약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li> <li>- 담배꽂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li> <li>*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li> <li>- 물로 행군후 음료수병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li> </ul>
4. 고 철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철(공기구, 철사못, 철판등 쇠붙이)</li> <li>-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li> <li>- 위와 같음</li> </ul>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 플라스틱류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별표 2)

관급규격봉투의가격

(단위: 원)

구 분	가 정 용	사 업 장 용
5 ℓ	70	-
10 ℓ	130	-
20 ℓ	260	280
50 ℓ	630	680
75 ℓ	-	1010
100 ℓ	-	1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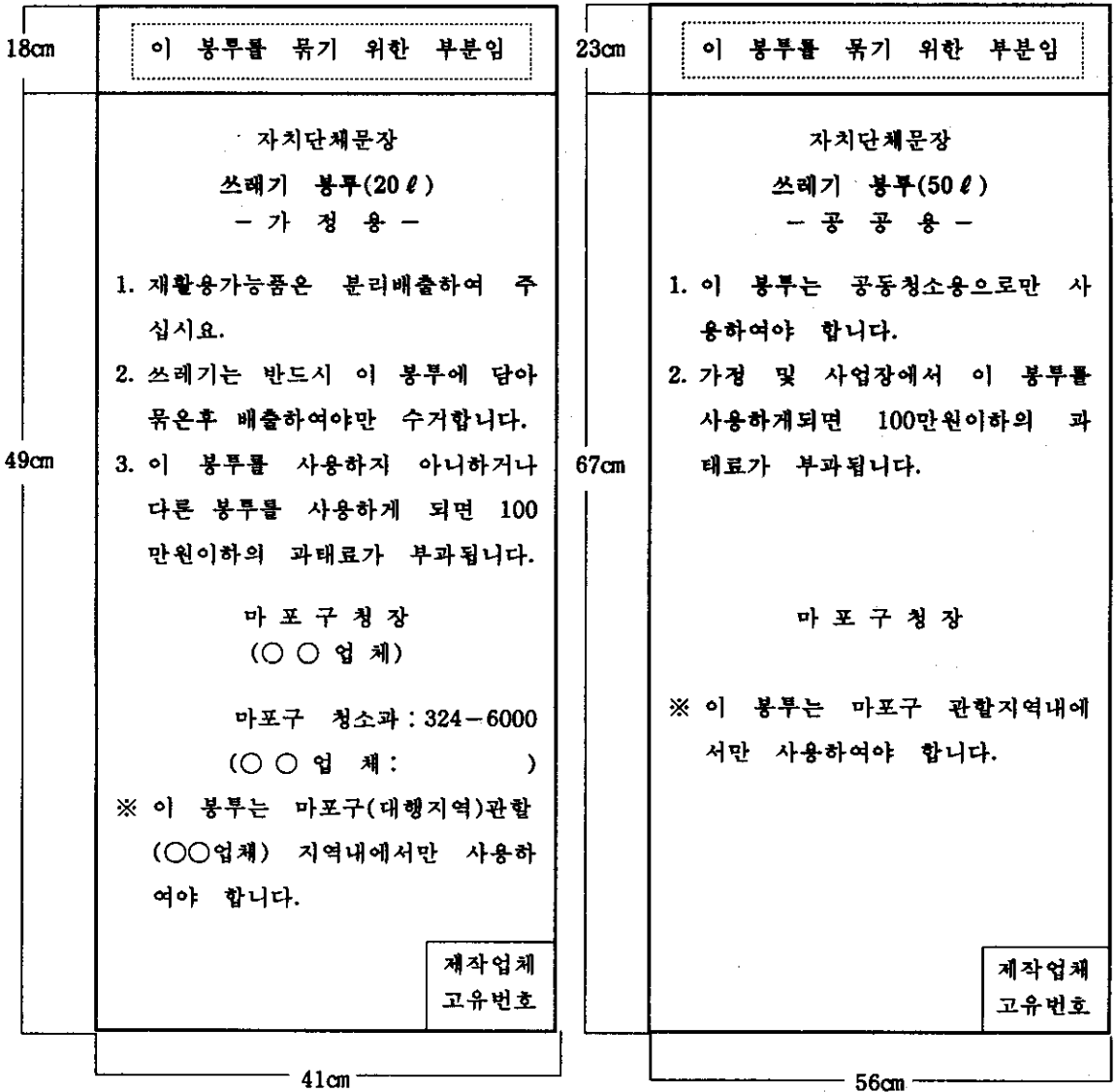
(별표 3)

봉투의용량별 규격 및 용도

용 량	규격(가로×세로cm)	두께(mm)	용 도
5 ℓ	26×31	0.020	가정용
10 ℓ	33×40	0.020	가정용
20 ℓ	41×49	0.025	가정용, 사업장용
50 ℓ	56×67	0.030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
75 ℓ	64×77	0.035	사업장용, 공공용
100 ℓ	71×85	0.040	사업장용, 공공용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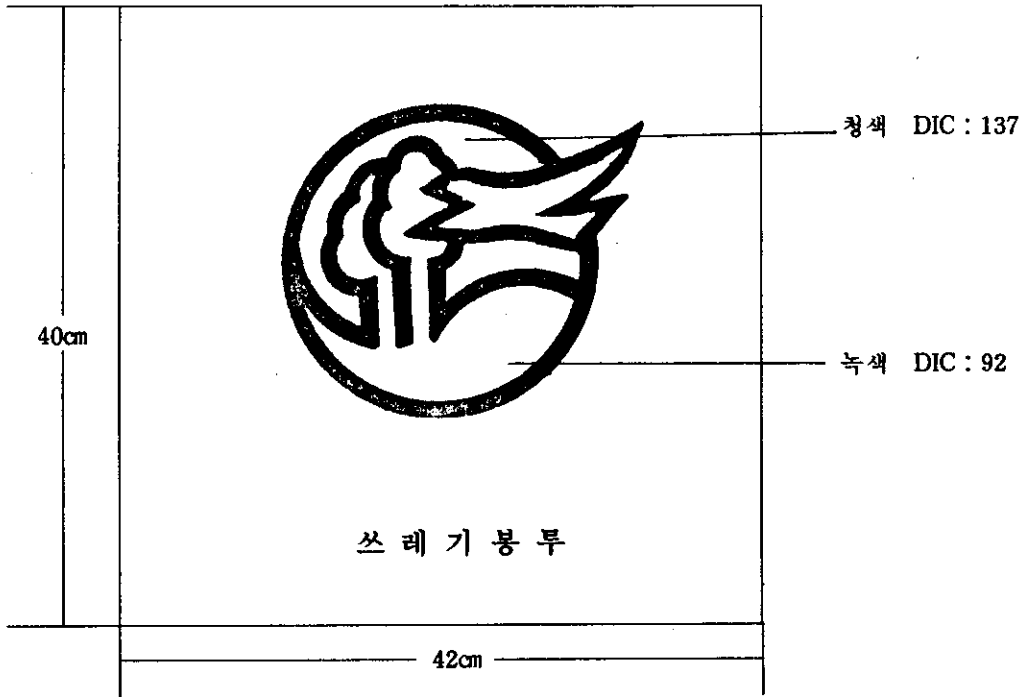
규격 봉투의 사양



- 사업자용 봉투는 “가정용”대신 “사업장용”으로 표시
- 직영지역은 해당구청 표시만하고 대행지역은 구청과 업체명 동시표시
- ※의 (대행지역) 및 (○○업체)는 대행업체별 수거지역 표시
- 여분의 길이 =  $\frac{\text{가로길이}}{\pi} + 5\text{cm}$
- 묶는 부분에 표시한 점선은 제2모델로서 잘라내는 부분임

(별표 5)

규격봉투 판매소 표지판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자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자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6)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 수집·운반수수료

종 별		부 과 기 준 (단위: 원)		비 고
다 량 폐 기 물	일 반 다 량	m <sup>3</sup> 당	5,100	·쌍방 합의하에 효율의 10%범위 안에서 가산 징수할 수 있다.
	오 니 케 익 등	톤당	6,800	
건 축 물 폐 재 류		m <sup>3</sup> 당	10,000	·쌍방 합의하에 효율의 20%범위 안에서 가산 징수할 수 있다.

비고: 1. 오니케익 등이라 함은 하나의 배출처에서 단일성상으로 다량배출되는 폐기물로서 발생단계부터 무게의 비중치가 높아 부피로 환산함이 부적당하고 일반쓰레기와 완전구분되어 독립된 수집·운반·처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폐기물

2.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 7)

##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품 목 별	규 격	부 과 금 액 (단위: 원)	비 고
냉 장 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텔 레 비 전	42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세 탁 기		3,000	
애 어 콘	264㎡형 이상	8,000	
	66㎡형 이상	5,000	
	66㎡형 미만	3,000	
가 스 오 븐 렌 지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2,000	
탈 수 기		2,000	
공 기 청 정 기	높이1m 이상	2,000	
장 농	120cm 1쪽	15,000	
	90cm 1쪽	10,000	
서 램 장	5단 이하	4,000	
	4단 이하	2,000	
신 발 장		2,000	
문 갑		3,000	
화 장 대		3,000	
장 식 장		4,000	
용 접 세 트	장 의 자	5,000	
	의 자	2,000	
침 대	1인용	10,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2인용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품 목 별	규 격	부 과 금 액 (단위 : 원)	비 고
캐 비 닷		4,000	
화 일 캐 비 닷	4단 이상	3,000	
	3단 이하	2,000	
양 수 채 상		7,000	
편 수 채 상		4,000	
피 아 노		15,000	
울 겐		4,000	

(㉞)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 8)

일반폐기물처리비 중별부과기준

종 별		부 과 기 준 (단위 : 원)		비 고
다 량 폐기물	압 축 폐 기 물	m <sup>3</sup> 당	6,190	월별배출량에 따라 부과
	미 압 축 폐 기 물	m <sup>3</sup> 당	2,170	
	농 수 산 폐 기 물	m <sup>3</sup> 당	3,500	
	음 식 폐 기 물	m <sup>3</sup> 당	5,220	
건축물폐재류		톤당	8,000	

- 비고 : 1.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고시하는 반입료가 변동될 경우 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함
2. 다량폐기물중 농수산폐기물이라 함은 농수산물의 보관·운반 및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배출처에서 다른 일반폐기물과 완전 구분되어 독립된 수집·운반 체계를 갖추고 있는 폐기물
3. 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스스로 수집·운반 처리하는 다량배출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제정한 중량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한 반입료를 부담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년 월 일까지 시증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12  
마포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의무부자	성 명		
	주 소		
세 입 과 목	(관)임시적세의수입(항)잡수입(목)과태료(폐기물관리법위반)		
위 반 사 항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		
과 태 료 금 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장 소	시중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우체국 번창구(한은, 산은 제외)		
위의 금액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 납 일부인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인)			

(수납은행 보관용)

과태료 영수필통지서

12  
마포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의무부자	성 명		
	주 소		
세 입 과 목	(관)임시적세의수입(항)잡수입(목)과태료(폐기물관리법위반)		
위 반 사 항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		
과 태 료 금 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일부인	
마 포 구 청 장 (인)			

(구청 보관용)

과 태 료 영 수 증

12  
마포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의무부자	성 명		
	주 소		
세 입 과 목	(관)임시적세의수입(항)잡수입(목)과태료(폐기물관리법위반)		
위 반 사 항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		
과 태 료 금 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 납 일부인	년 월 일		수 납 일부인
	은행 지점 (인)		

(별지 제2호의2서식)

(처분기관 보관용)

(갑)

【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	계호	년도일반년도	세입과목	(관) 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 (목) 과태료(폐기물관리법위반)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시중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7조		의견진술기간	까지	의견진술장소	
위반행위자 서명				단속공무원 확인		

년 월 일

특기사항

- 표의 뒷면 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 서식 갑 및 병, 정을 각각 복사용먹지 부착 인쇄

168mm×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sup>2</sup>)

(을)

(피 처분자 통지용)

【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	계호	년도일반년도	세입과목	(관) 임시적세의수입(항)잠수입 (목) 과태료(폐기물관리법위반)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시중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7조		의견진술기간	까지	의견진술장소	
위반행위자 서명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

168mm×118mm

(인쇄용지 [특급] 34g/㎡)

(수납은행 보관용)

(병)

【과태료납부서】

12  
마포

발행번호	계호	년도일반년도	세입과목	(관) 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 (목) 과태료(폐기물관리법위반)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시중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 (인)

수납일자인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sup>2</sup>)

(정)

(개인통지용)

[ 과태료 납부 영수증 ]

12  
마포

발행번호	계호	년도일반년도	세입과목	(관) 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 (목) 과태료(폐기물관리법위반)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시중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

수납일자인

취급일자인

168mm×118mm

(인쇄용지 [특급] 34g/㎡)

(무)

(구청 통보용)

【 과태료 납부영수필 통지서 】

발행번호	계호	년도일반년도	세입과목	(관) 임시적세의수입(항)잡수입 (목) 과태료(폐기물관리법위반)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시중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인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귀하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sup>2</sup>)

<별지 제3호 서식>

<b>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b>			
납부의무자	① 정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한

위의 과태료 금액이 채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④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번호
	⑤ 고 지 받 은 일 자		⑦ 과 태 료 금 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수 신

발신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인)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 제기자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고지일자	⑥과태료금액	
	⑤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7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일련 번호	②통지서 번호	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	④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금액 (원)	납부의무자		⑩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⑪이의제기일	⑫법원통보일